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	------

제출년월일 : 2017.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 및 인용조항의 정비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함. (안 제21조제2항, 제31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
- 나. 일자리 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 (안 제28조제4항)
- 대부료 50퍼센트 감액(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0호)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함(안 제36조제1호·제4호·제8호·제9호·제10호)
- 라. 기타 법령사항 등을 반영한 미비점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0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 되는 규제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12. 08. ~ 12. 28. (제출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 동의

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7. 1. 5.)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대비표 1부.

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제1항제6호가목 중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를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제6조제4항 중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7조 중 “절감하여야”를 “줄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할”을 “사용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허가하고자”를 “사용·수익허가 하고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전대”를 “다시 대여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받은”을 “사용·수익허가 받은”으로, “전대하는 때”를 “다시 대여할 경우”로, “전대받은 자”를 “다시 대여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일반재산 내부의 준용)”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행정재산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조례 제34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조례”를 “조례 또는 다른 조례”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이상”을 “4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이상”을 “2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5 이상”을 “15 이상”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설치에”를 “설치와 그 운영에”로,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로, “사용하는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부료율”을 “대부료율”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바닥면적 이외에”를 “바닥면적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만달러”를 “100만 달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달러”를 “2천만 달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를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를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를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

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를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부료를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으로,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교환차금의 납부)”를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같은 지역”을 “동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67조제7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기관에서”를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8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제3항 중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8조의2 중 “연 3퍼센트”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91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경과 조치) 2016. 7. 12일자로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조례 제21조제2항, 제31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 7. 12일자로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조례 제88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의2(심의회 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략)</p> <p>6.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의</p> <p style="padding-left: 2em;">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 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padding-left: 2em;">나. (생략)</p> <p>7. (생략)</p>	<p>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의2(심의회 의 기능) ①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 style="padding-left: 2em;">가. -----</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나.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②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2. (생략)
-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4. ~ 7.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

-----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
-.

② -----

-----.

- 1.·2. (현행과 같음)
-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수립·시행하여야 -----
-----.

제7조(재산의 집단화) -----

----- 줄

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 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여야 -----.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사용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사용·수익허가하고자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시 대여 받아 -----.

③ ----- 사용·수익허가 받은 ----- 다시 대여할 경우-----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등을 말한다.

- 다시 대여 받은 자-----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 사용료-----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조례 제34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
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
의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
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③ 마포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
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
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
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
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 ---

----- 조례 또는 다른 조례 -----

----- 50 이상 -----

② -----

----- 40 이상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20 이상 -----.

----- 15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 5.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

----- 1
0 이상-----.

④ -----

----- 25 이상-----.

1. ~ 5. (현행과 같음)

⑤ -----

----- 10 이상-----.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 설치와
그 운영에 ----- 벤처기업집
적시설의 설치·운영자-----

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마포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마포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 10. (생략)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 벤처기업 -----

5.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 10. (현행과 같음)

11.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⑥ -----

그 대부료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대부료율-----

-----.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
바닥면적과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가. -----

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
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 사.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 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 사.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
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
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
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 100만 달러 -----

나. -----
- 2천만 달러 -----

다. ~ 사. (현행과 같음)

2. -----

-----.

가.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

가. -----
-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

나. ~ 사.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
조제9항-----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략)

③ (생략)

<신설>

제31조(대부료의 납기) ①·② (생략)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31조(대부료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② -----

-----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

트로 한다.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대부요율

7. ~ 10. (생략)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

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

1. ~ 5. (현행과 같음)

6. 대부료율

7.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8.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1. ~ 5.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

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34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마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 2012년 12월 31일 -----

----- 동지역 -----

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
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생략)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
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
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
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
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마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
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
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

2. (현행과 같음)

3. -----

----- 1 이상 -----

4. -----

----- 2012년 12
월 31일 -----

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5. 마포구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마포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6.·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5. -----

----- 50
퍼센트 -----.

6.·7. (현행과 같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

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67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 6. (생략)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② (생략)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2이상 물품의 총량
- 3.·4. (생략)
-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

제67조(물품의 가격) -----
-----.

1. ~ 6. (현행과 같음)
7. ----- 제6호-----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1. (현행과 같음)
2. 2 이상 -----
- 3.·4. (현행과 같음)
- ④ -----

-----.

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물품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 ⑧ (생략)

제87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생략)

<신설>

제8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② (생략)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

----- 감정평가

⑤ ----- 감정평가업자가-----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자율은

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8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 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업자에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재무과 양선주
연락처	02-3153-8601